

2026년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 공고 (^①전기요금, ^②해남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, ^③배달수수료)

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, 안정적인 경영환경 제공을 위하여 『2026년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일

해 남 군 수

□ 사업 개요

- 목 적: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
- 지원대상: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(신청일 기준 해남군에
 사업장을 등록·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)
- 사 업 비: 366백만원(군비)
 (^①전기요금 96백만원, ^②카드수수료 240백만원, ^③배달수수료 30백만원)
- 사업내용

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 (천원)	지원 한도	지원대상	신청일
전기요금 지원	사업장 전기요금 지원	96,000	10만원	연매출 3억이하 소상공인	6. 4.~
해남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	해남사랑카드상품권 거래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원	240,000	22만원 ~ 30만원		
먹깨비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	먹깨비 가맹점주에게 배달수수료 지원	30,000	20만원 (건당 1천원)		

※ 중복지원 제한: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 1인이 전기, 배달수수료, 카드수수료 3종 지원하는 것은 가능

□ 신청·접수

○ 신청기간: 2026. 6. 4.(목) ~ 사업비 소진시까지

○ 제출서류:

[공통] ①지원 신청서,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③사업자등록증 사본,
④통장사본, ⑤연매출 증빙서류 (일반·간이과세자-부가가치세
과세표준증명 / 면세사업자-수입금액증명원)

[전기요금 지원 신청시] 사업장으로 부과된 전기요금 고지서

※ 사업장 주소, 고객번호, 전기종류, 납부자 확인가능 하여야 함.

○ 신청방법

- 각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산업팀 방문
- 해남군청 6층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
우)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농촌경제과

○ 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

구분	서 류 명	취급기관
작성서류 (본인 작성)	❶ 각 사업 지원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읍면사무소 비치
제출서류 (본인 첨부)	❸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명) ❹ 통장사본(대표자 명의)	-
제출서류 (과세유형별 필요 서류만 제출)	❺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/ 수입금액증명 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온라인 발급 -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발급 - 무인민원발급기 가능(시군 민원실 등에 설치)	세무서 또는 읍면 무인민원발급기
제출서류 (전기요금 신청시)	❻ 전기요금고지서 (자동이체시 납부내역 캡처본 제출 가능) ※사업장 주소지, 전기 종류, 납부자 확인 가능해야 함	한전ON(고객번호 조회) 정부24(전기요금 납부내역 조회)

□ 문의처

○ 각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산업팀

○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: 061-530-5353

사업 세부 내용

1 전기요금 지원

- 신청기간: '26. 6. 4.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
 - ① 사업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사업장을 등록·유지
 - ② '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3억원 이하('26년 신규 사업장 지원 가능)
 - ③ 사업 시행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 - ④ 일반용, 산업용, 영업용, 교육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지원제외
 - ① 주택용(주거용), 농사용 전기
 - ② 소상공인 **경영안정바우처** 지원사업, **착한가격업소** 전기요금 지원사업
- 지원내용: 업체별 전기요금 10만원 지원
- 신청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사무소 또는 농촌경제과 방문
- 제출서류: ①지원 신청서,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③사업자등록증 사본, ④통장사본, ⑤연매출 증빙서류, ⑥사업장으로 부과된 전기요금고지서(2026년도)

2 해남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

- 신청기간: '26. 6. 4.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: 연매출 3억원 이하 해남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
 - ※ **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함.**
- 지원내용: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거래에 따른 카드수수료 연 1회 지원
- 지원금액: 매출 규모별 차등 지원

구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
매출구간 (2025년)	1,400만원 이하 및 신규사업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
지원금액	220,000원	240,000원	260,000원	280,000원	300,000원

- '26. 1월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업체: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실적 확인 후 지원 가능 → **1구간** 기준으로 지급

- 신청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사무소 또는 농촌경제과 방문
- 제출서류: ①지원 신청서,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③사업자등록증 사본, ④통장사본, ⑤연매출 증빙서류

3

먹깨비 가맹점 배달 수수료 지원

- 신청기간: '26. 6. 4.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: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공공배달앱 ‘먹깨비’ 가맹점주
- 지원내용: 배달 1건당 1천원(최대 20만원)
- 지원방법: 신청자 모집 후 먹깨비 본사를 통해 배달 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지급

① 먹깨비 가맹점주 가입	② 신청접수	③ 실적확인	④ 지급
먹깨비 사장님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	신청서 제출 (신청서, 증빙서류 제출)	먹깨비 본사를 통해 실적 확인	사업비 지급
신청자→먹깨비 본사	신청자→읍·면→군	군	군→신청자

- 신청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사무소 또는 농촌경제과 방문
- 제출서류: ①지원 신청서,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③사업자등록증 사본, ④통장사본, ⑤연매출 증빙서류

- 붙임 1. 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2. 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

붙임 1

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('25.9.1.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식료품 제조업	C10	
4. 음료 제조업	C11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
18. 운수 및 창고업	H	
19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21. 광업	B	
22. 담배 제조업	C12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31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
[비고]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붙임 2
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유탐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(신설)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(신설)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